

## 위·수탁용역사업계약(협약)체결및운영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위·수탁사업(이하 '위·수탁사업'라 한다)의 계약(협약)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'위·수탁협약'이라 함은 정부, 지자체, 공익법인, 산업체와의 협약을 말한다.
- ② '위탁기관'이라 함은 용역사업 또는 사업을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.
- ③ '수탁기관'이라 함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.
- ④ '업무'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체결, 예산편성, 예산집행, 연구비 입금, 연구비 청구, 결과보고 등 제반업무를 말한다.
- ⑤ '책임자'라 함은 연구과제를 총괄하는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(이하 '교원')을 말한다.
- ⑥ '소(센터)장' 이라 함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(이하 '교원')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모든 위·수탁용역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계약조건)** ① 위·수탁사업 책임자는 본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.

- ② 위·수탁사업 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.
- ③ 위·수탁사업비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 및 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위·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책임자 및 센터장과 고용관계를 체결 한다.

**제5조(계약체결)** ① 위·수탁사업 계약을 원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을 구비하여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업무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1. 위·수탁사업 계약(협약)을 위한 책임자 의견서 1부(별지서식 제1호)
2. 위·수탁사업 책임자 서약서 1부(별지서식 제2호)
3. 위·수탁사업 계약(협약)서 2부.
4. 위·수탁사업(비) 운영계획서 1부.

### 7-1-3~2 제7편 산학협력단

②위·수탁사업 계약(협약)체결에 필요한 계약(협약)서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관에서 기관 표준계약(협약)서 서식(이하 ‘위탁기관 서식’ 이라 한다)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을 점검 후 사용할 수 있다.

③계약(협약)체결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한다.

**제6조(계약 주요사항)** ①위·수탁사업 계약(협약)을 원하는 책임자는 계약(협약)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먼저 확인한 후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분쟁 발생 시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 범위
2. 책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(협약)해지 시 사업비 반환 범위
3. 위탁기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계약(협약)해지 시 사업비 반환 범위
4. 기자재 및 비품의 귀속 범위
5. 사업 참여 인력의 승계에 관한 사항
6. 사업과 관련한 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여부
7. 사업비 중 간접비 지침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
8. 계약의 해제, 해지시 손해배상 및 그 담보에 관한 사항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계약(협약)체결을 거부할수 있다.

1. 분쟁 발생 시 대학에 배상 책임 및 금액을 명시하거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경우
2.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(협약)해지 시 기 사용한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3. 위탁기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계약(협약)해지 시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4. 사업 종료 시 참여 인력에대한 고용승계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구하는 경우
5.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교에 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경우
6. 사업비 중 간접비 공제에대한 지침이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

**제7조(사업비 및 회계관리)** 책임자는 위·수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‘위·수탁사업’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수탁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(관리책임)** ①책임자는 위·수탁시설의 관리·운영에 있어 시설물 안전

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‘책임자’는 위·수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. 다만, 위탁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9조(협약의 해지 등)** 책임자는 위·수탁시설에대한 위탁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‘수탁기관’에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당해 위·수탁 계약의 해지여부를 심사할수 있다.

**제10조(해지에따른 사업비 반환)** ①계약(협약)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(협약)을 해지하는 경우, 사업비 반환을 잔액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계약(협약) 체결한다.

②수탁기관은 계약(협약)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위탁기관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,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도록 계약(협약)을 체결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계약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위·수탁 계약/협약체결을 위한 책임자 의견서

위탁기관 명			
사 업 명			
계 약 기 간			
계 약 금 액			
계약/협약서(안) 주요사항 확인 (규정 6조2항)	항목	있음(○)	없음(×)
	1. 분쟁 발생 시 대학의 배상 책임 및 금액을 명시하거나 무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		
	2. 책임자의 귀책으로 계약/협약 해지 시 기 사용한 사업비 반환		
	3. 위탁기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계약/협약 해지 시 사업비 반환		
	4. 사업 종료 시 참여 인력의 고용을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		
	5. 사업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의 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경우		
	6. 간접비 공제		%
계약/협약서(안)의 문제점 및 특이사항			
사업책임자의 의견			

20 . . . . .

가천대학교 \_\_\_\_\_과  
교 수 \_\_\_\_\_印

산학협력단장 귀하

(별지서식 제2호)

### 위·수탁사업 운영에 대한 서약서

위탁기관인 ( )와 수탁기관인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 
 계약(협약) 체결 사항인 ( )센터 ( )사업)  
 운영을 담당할 책임 교수로서 사업에 대한 민사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 
 않도록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.

특히 아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되며 본 대  
 학교의 이미지 제고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 
 다하겠습니다.

1. 인력의 고용 및 운용은 사업수행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  
 종료 후 잉여인력 내지 인력승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2. 시설장(공간)에 대해서는 지도교수(책임교수)가 책임을 진다.
3. 총 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 한다.
4. 집기 및 기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.

20 . . . .

가천대학교 \_\_\_\_\_ 과  
 교 수 \_\_\_\_\_ 印

산학협력단장 귀하